

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6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. 30.

발의자 : 조정식 · 김영진 · 유동수  
전현희 · 원혜영 · 윤관석  
남인순 · 김정우 · 박완수  
심기준 · 윤영일 · 노웅래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준임(2015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2.2명, OECD 평균의 2배)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교통수단·교통체계의 운행 등에 관하여 감독 등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(이하 “교통문화지수”)를 개발·조사·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제2항).

##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한 교통안전 개선사업 및 교육 등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교통문화지수의 조사) ①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57조(교통문화지수의 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한 교통안전 개선사업 및 교육 등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